

## 배우이 증겁고 가르침이 기쁜되는 참 행부한 월존교육

## 코루나19 관련

2022. 3. 7

월촌초등학교

2022학년도 출결 및 평가 방침 안내

**78°** 544-0433

학부모님께

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되며 중요한 내용을 가정에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) 출결 처리

가. 등교중지학생: 「학교보건법」제8조, 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제22조 및 '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'에 따라 출석인정결석 처리

나.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: 증빙서류 간소화

학생			
(방역당국에서 발송한) 문자통보 내용(캡처, 종이인쇄)			
(가정에서 작성한)			
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			
⇒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			

	담임 교사		학교장
$\rightarrow$	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	$\rightarrow$	승인
	⇒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		

다.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이외의 출석인정결석(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)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: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2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양식 탑재 라. 상황별 출결 처리

- ①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(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)
  - 가.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/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
  - :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,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
  - 나.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
  - :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,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, 단
- ②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
  - :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,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
- ③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,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 상이 있는 경우
  - :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,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(단순 재검출)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실시하지 않음.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 결석,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
  - ④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이상반응 발생시
  - : 접종 후 1-2일은 출석인정결석(증빙서류: 예방접종확인서) 3일 이상 지속시 질병결석 처리

## 2) 학생평가 및 기록

가. 학생평가: 워격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다양한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 확인하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 · 공정성을 확보

나. 평가운영 조정: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 일정을 조정하여 등교 후 평가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참여 등을 통한 직접 관찰 및 평가로 처리할 수 있음.